

『경상북도 중·서부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1월 31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2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2월 13일

제21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권 순 서

나. 제안이유

- 新도청시대와 더불어 경북 중·서부권 상생 발전을 위한 8개 시·군 현안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중·서부권의 잠재적 발전역량 강화와 지자체간 균형발전을 위한 연계사업발굴 등 상호협력의 틀을 구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안) 제1조~제4조 : 협의회 설치 목적, 구성, 조직, 사무소 위치
- 안) 제5조 : 주요 처리사무에 관한 사항
 - 상생발전 목표와 비전설정
 - 국·도비 예산확보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 -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
 - 재원 분담 및 투입 등 행정협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등
- 안) 제6조 : 협의방법에 관한 사항

- 안) 제7조~제8조 : 회의 및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
 - 정기회 : 연 2회(상·하반기)
 - 임시회 :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의 요구가 있을시
- 안) 제9조~제10조 : 협의사항의 준수 및 조정에 관한 사항
- 안) 제11조 : 간사와 서기 지정 방법
- 안) 제12조~제13조 : 경비부담 및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
 - 자치단체 별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실무협의회 구성
 - 실무협의회의 역할 및 활동사항
- 안) 제14조 : 회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사무인계에 관한 사항
- 안) 제15조~제16조 : 규약개정 및 보칙에 관한 사항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95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근 도

○ 본 동의안은

新도청시대와 더불어 경북 중·서부권 상생 발전을 위한 8개 시·군 현안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중·서부권의 잠재적 발전역량 강화와 지자체간 균형발전을 위한 연계사업발굴 등 상호협력의 틀을 구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협의회 설치 목적, 구성, 조직, 사무소 위치에 대해 규정하였고,
-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주요 처리사무에 관한 사항 및 협의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회의 및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
-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 협의사항의 준수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
- 안 제11조에서 간사와 서기 지정 방법을 규정하였고 ,
- 안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 경비부담 및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14조에서 회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사무인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
- 안 제15조에서 제16조까지 규약개정 및 보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동의안은
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(행정협의회 구성)에 의거 경북 중·서부권 8개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
- 신도청시대와 더불어 경북 중·서부권 상생 발전을 위한 8개 시·군 현안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동 대응을 추진하고 중·서부권의 잠재적 발전역량 강화와 지자체간 균형발전을 위한 연계사업발굴 등 상호협력의 틀을 구축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 론 요 지 : 생략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